

◆ 기초연금도입 과정과 국민연금 연계안 검토

강성호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201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으나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역비례하여 연계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인식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어 기초연금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이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에는 변화가 없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보다 수혜의 폭이 넓음.

○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경우 국민연금과의 연계조건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되고 있음.

■ 두 공적연금 제도 간 연계 문제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과정 등에서 나타난 제도 간 관계 검토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도입 과정에서의 쟁점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국민연금과의 연계 필요성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기초연금제도 도입으로 인한 연금시장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사적연금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노인빈곤에 대한 정책대응과 기초연금으로의 전개 과정

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로연금제도 도입

■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 노인계층의 빈곤 및 연금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같은 보편적 노인소득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빠른 가입확대 과정에서 국민연금제도로부터 소외받은 노인 계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1997년 국민연금제도 개선 기획단 등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편적 복지로서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음.

■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노인빈곤 대책인 경로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그쳐 노인빈곤 및 연금 사각지대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여지를 남김.

- 경로연금제도(1998년 7월 시행)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전체 노인의 20.4%(1998년)에서 13.6%(2007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표 1〉 참조).
- 급여수준은 2006년 기준 월 35,000~50,000원 정도로 노후빈곤을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함(정경희 외 2007).

〈표 1〉 경로연금의 지급현황

(단위: 명,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A)	623,479	574,700	565,898	583,755	585,000
기초생활보장노인	248,764 (39.9)	288,303 (50.2)	333,561 (58.9)	345,769 (59.2)	339,000 (57.9)
저소득노인	374,715 (60.1)	286,397 (49.8)	232,337 (41.1)	237,986 (40.8)	246,000 (42.1)
A/65+노인(%)	20.4	18.0	16.7	16.4	15.5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A)	619,592	618,531	619,385	612,736	654,227
기초생활보장노인	346,113 (55.9)	360,360 (58.3)	378,149 (61.1)	387,286 (63.2)	406,488 (62.1)
저소득노인	272,479 (44.0)	258,171 (41.7)	241,236 (38.9)	225,470 (36.8)	247,739 (37.9)
A/65+노인(%)	15.6	14.9	14.2	13.4	13.6

주: 2007년은 계획치임.
자료: 정경희 외(2007).

나. 노후소득의 확대보장과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과 2003년 재정계산 실시 후 제안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은 그 내용이 재정안정화 중심이라는 비판에 부딪쳐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모두 담보상태에 머무름.

- 재정안정화를 중시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은 노후소득보장과 사각지대 개선을 전제하지 않고는 합의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이에 기초연금 논의가 다시 쟁점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야당(한나라당·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이 주장되었고, 여당(열린우리당)에서는 기존의 경로연금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함(2005년 4월).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달성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우선 도입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담보상태를 면치 못함.

■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두 정책목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제도적 성격이 모호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탄생함(2007년 4월).

- 2006년에 제안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여야 간 입장차이로 평행선을 긋다가 노인의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A값의 5%를 지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도입됨.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도입초기부터 포괄성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공공부조와 조세방식 사회보험제도 중 어느 성격을 갖는 지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음.

■ 재정안정화 중심의 국민연금제도로 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70%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2028년까지 국민연금 A값의 10%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됨(2007년 7월).

-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적용된 수급자 수(수급률)는 2008년 2,897,649명(57.16%)에서 2011년 3,818,186명(66.97%)으로 증가함.
- 급여수준은 2012년 4월~2013년 3월까지 적용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 최고 94,600원, 부부 수급자는 매월 최고 151,400원이었음(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

〈표 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및 수급률 추이(매년 12월 기준)

연 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규모 및 수급률		
	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급자 규모(명)	수급률(%)
2008년	5,069,273	2,897,649	57.16
2009년	5,267,708	3,630,147	68.91
2010년	5,506,352	3,727,940	67.70
2011년	5,700,972	3,818,186	66.97

주: 2011년 자료 중 65세 이상 전체 인구는 행정안전부(주민제도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현황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급자에는 2010년 10월 이후 거주 불명 등록자가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08~2010);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수급자 현황(보건복지부 2012).

■ 기초노령연금 도입 결과, 현 노인계층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은 확대되었지만, 기초노령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제도(한시적, 임의적)로 보는 시각 등으로 인해 여전히 제도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음.

3. 기초연금제도 도입 쟁점

■ 두 차례(1998년, 2007년)에 걸친 국민연금제도 개혁과정에서 재정안정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와 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음.

- 2012년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전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과 연금 사각지대 논쟁의 핵심이었던 기초연금 도입논쟁은 종지부를 찍음.
- 이후 기초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과정에서 대선공약 실천과 경제환경·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이라는 대립으로 논쟁은 새로이 전개됨.

■ 2012년 대선공약 이후 인수위안(13. 2. 21), 행복위안(13. 7. 17), 정부 기초연금안(13. 9. 26) 마련까지 제도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다양한 비판과 보완이 있었음.

- 지급대상 면에서는 현 노인의 70~100%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적용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재정적 문제 등의 이유로 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동일한 70% 범위 내에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결정하게 됨.
-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A값(2013년 현재 약 200만 원)의 일정비율(5~10%)로 하되, 인상기준은 A값상승률, 물가상승률, 혼합형(물가상승률 적용 후 격차 보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제안됨.
-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훼손을 우려하여 일반 조세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인수위 안 발표이후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음.
-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자는 것과 2014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음.

■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정부의 최종적 기초연금안은 급여수준과 급여조정에 따른 소요재원, 그리고 관리운영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 외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됨.

-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28년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A값의 10% 급여수준(20만 원)을 2014년부터 즉시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외에 크게 달라진 것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표 3〉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안 비교

구분	기초노령연금	인수위안 (’13. 2. 21)	행복위안 (’13. 7. 17)	기초연금안 (’13. 9. 26)
지급 대상	노인의 70%	노인 100% (특수직역제외)	노인의 70~80%	노인의 70%
급여 수준	A값의 5% (’12: 9.5만 원) ※ ’28년까지 10%(20만 원)	4~20만 원 (소득과 가입기간 차등) ※ 물가연동(5년 마다 격차 보전)	최고 20만 원 (A값의 10%)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	10~20만 원 (가입기간 역비례) ※ 물가연동(5년 마다 격차 보전)
재원	조세	조세	조세	조세
’14.7~’17년 재정소요액 (’40년)	26.9조 원 (112조 원)	40조 원 (104조 원) ¹⁾	36.1조 원(1안) (68.4조 원)	39.6조 원 (99.9조 원)
관리 운영	국민연금과 분리운영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좌동	좌동
시행	2008. 1월~	2014. 7월~	좌동	좌동

주: 1) ’50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7. 17; 9. 26; 10. 2), 보건복지부(2013. 9)를 참고하여 저자가 직접 정리함.

- 급여인상 수준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하다 보니, 2040년 경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제시된 모든 안에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4.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제도의 연계안 검토

가. 연계필요성 및 정당성 논의

■ 기초연금제도는 도입과정(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에서 항상 국민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두 제도 간 연계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도입(1988) 혹은 경로연금도입 시점(1998)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연계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고려하더라도 두 제도 간 연계의 필요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간단히 표현하면 $P = \alpha \times (A + B) + 0.05n$ ²⁷⁾로 나타낼 수 있고, 균등부분(A급여)과 소득비례부분(B급여)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균등부분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논리적으로는 제도 간 연계시 기초연금 급여의 확대보장만큼 균등부분의 소득보장수준을 조정할 명분이 생김.

■ 연계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입기간에 반비례하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계방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음.

-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일정비율의 A급여만큼 차감한 후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부가연금액을 합산하여 산출되므로 A급여가 증가할수록 감소함.
 - 기초연금액²⁸⁾ = (기준연금액 - 조정계수[2/3]×A급여) +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 앞의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A급여(P_A)는 A값($B=0$)에 의해 결정되는 급여부분 ($P_A = \alpha \times A + 0.05n$)으로 가입기간인 n 에 비례하여 증가하나 기초연금액은 조정계수와 A급여의 곱의 수치에 해당하는 만큼 차감되어 지급됨.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 의하면 현 정부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및 미래노인세대에 대한 역차별적인 제도로 평가한 바 있음.²⁹⁾

나. 연계를 둘러싼 쟁점들

■ 연계 이후에도 여전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순이전소득 관점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27) P 는 연간급여액, α 는 일정 소득대체율이 되게 하는 조정계수, A 는 전체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 B 는 자신의 생애평균소득월액, n 은 가입연수.

28) 기준연금액: 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 원)으로 규정
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 국민연금 수급자들에 대한 최소 기초연금액.

29)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및 미래노인세대의 역차별적인 차등지급방식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있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기초연금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함(<http://www.ecdaily.co.kr/news>).

〈표 4〉 현재세대 vs 미래세대 노인의 공적연금액 비교

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 월소득 : 200만 원 · 가입기간 : 15년	현 세대 노인 * 14년부터 연금수급	416천 원	161천 원
	미래세대 노인 * 14년부터 연금가입	326천 원	191천 원
차이		▽90천 원	△30천 원

자료: 보건복지부(2013. 9).

- 연계방법에 대한 불만 및 정당성 문제의 발단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기초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연계의 문제가 제시되고 있음.
-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의 감소,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장기가입 저해, 후세대의 불리 등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일정기간까지는 급여수준이 증가하나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2014~2017년 동안의 두 제도 간 소요재정을 비교하면, 기초노령연금은 26.9조 원, 기초연금은 39.6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초연금의 소득보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2030년 이후는 오히려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보다 소요예산이 적게 들어 소득보장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초노령연금은 임금상승률과 유사한 A값 상승률에 의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임.

〈표 5〉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정부안 소요재정 비교

(단위: 조 원)

구분	2014~2017	2020	2030	2040
현행 기초노령연금	26.9	13.7	53.6	111.6
기초연금 정부안	39.6	17.2	49.3	99.8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9).

■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이 불리하여 가입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함.

○ 국민연금연구원(2013)에 의하면, 65세부터 84세까지 20년 동안 동일하게 수급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 이는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가입기간=0)와 이 사람이 월소득 100만 원으로 국민연금에 각각 11년, 20년, 30년을 가입한 경우를 비교한 결과임.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총연금액(= 국민연금 + 기초연금)과 순이전소득(= 총연금액 - 총보험료)이 모두 증가하므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유리함을 보여줌.

〈표 6〉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총연금액(20년 수급 가정)

가입 기간	낸 돈 (보험료 납부액)	받는 돈			이익 (받는 돈-낸 돈)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계	
0년	0	0	48,000,000 (200,000원* 12개월*20년)	48,000,000 (200,000원* 12개월*20년)	48,000,000
11년	11,880,800 (9만 원* 12개월*11년)	44,011,200 (183,380원*12개월 *20년)	48,000,000 (200,000원* 12개월*20년)	92,011,200 (383,380원* 12개월*20년)	80,131,200
20년	21,600,000 (9만 원* 12개월*20년)	76,651,200 (319,380원*12개월 *20년)	37,950,400 (158,127원* 12개월*20년)	114,601,600 (477,507원* 12개월*20년)	93,001,600
30년	32,400,000 (9만 원* 12개월*30년)	112,615,200 (469,230원*12개월 *20년)	24,000,000 (100,000원* 12개월*20년)	136,615,200 (569,230원* 12개월*20년)	104,215,200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3).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감소하는 특성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불리하다는 점도 재고될 필요가 있음.

○ 〈표 7〉에 의하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65세는 11년까지, 55세는 13년까지, 45세는 14년까지, 35세 이하는 15년까지)이 후세대일수록 길어져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어져도 후세대의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님.

〈표 7〉 세대별, 가입기간별 기초연금액(월)

가입 기간	65세 (1948년생)	55세 (1958년생)	45세 (1968년생)	35세 (1978년생)	25세 (1988년생)	15세 (1998년생)
10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1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2년	191,406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3년	181,42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4년	171,435	193,403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5년	161,449	185,165	196,399	200,000	200,000	200,000
16년	148,135	176,843	188,909	193,486	193,486	193,486
17년	134,821	166,858	181,337	186,746	186,829	186,829
18년	121,506	156,872	173,681	179,923	180,172	180,172
19년	108,192	146,887	165,943	173,016	173,515	173,515
20년	100,000	136,901	158,121	166,026	166,858	166,858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3).

- 세대별 평균가입기간(55세 18.2년, 45세 19.4년, 35세 20.8년, 25세 22.3년)을 고려한 기초연금 평균수급액을 산출하더라도 후세대의 기초연금액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청·장년층 기초연금 수급액 비교

구분	55세 (1958년생)	45세 (1968년생)	35세 (1978년생)	25세 (1988년생)
기초연금액(월)	121,507	130,667	144,400	144,807

주: 각 세대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제3차 장기재정추계 자료를 인용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3).

-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라 미래세대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견해와 관련하여, 이는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간 비교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보다 장기적으로 급여수준이 감소하게 되나 이는 두 제도 간 비교에 의한 것임.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 제도 내에서는 현 노인세대보다 미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낮은 것은 아님.

5. 연계 시사점과 사적연금의 대응

■ 제도 간 연계방법의 정당성 문제는 대선공약 불이행에 따른 불신, 복지욕구의 급속한 증가 및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하므로 종합적 복지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있음.

- 모든 노인에 대한 2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 지급에서 노인의 70% 범위에서 차등지급으로 수정됨에 따라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자성과 함께 장기적이고 종합적 관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장수리스크, 노인빈곤율 증가 등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인해 복지욕구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소득보장이 약화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고령화, 재정여력, 국민연금제도의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급여수준이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로 조정될 필요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함.

■ 복지정책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기존 수급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정책 수립 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기초연금은 그 도입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복지정책이 정치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임.
 - 급속한 고령화과정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남발은 정치적 악용일 뿐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킬 수 있음.
- 특히,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차원에서 최소한 2028년까지 약속된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은 기초연금을 통해서도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할 필요 있음.
 - '28년 이후는 국민연금성숙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제도도 변경될 여지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28년까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 역할 수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사적연금 활로 개척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과정에서 공적연금 간 소득보장 수준이 결정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욕구를 공적연금 및 공적복지 제도로만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OECD 기준으로 약 70%의 필요노후소득대체율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적연금제도는 현실적으로 45% 내외(국민연금 25% 내외, 기초연금 10%)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25%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보장이 요구되는 시점임.
- 따라서, 공적연금은 기본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사적연금은 삶의 질을 제고하는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퇴직연금의 정비 및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사적연금 활로 개척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 고 문 헌〉

- 국민연금연구원 (2013),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 한국연금학회·한국재무학회·연금연구원 공동세미나 자료.
- 보건복지부(2012),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시도별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3. 7. 17),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합의문 발표”.
- _____ (2013. 9. 26),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금년 대비 12.9% 증가한 46.4조 원”.
- _____ (2013. 10. 2),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2013.9), 『기초연금 도입 계획』 설명자료.
- 이용하·김원섭(2013),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사회보장연구』 제 29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1~25.
- 이용하(2013), 『인수위 기초연금(안)의 의의와 쟁점』, 한국연금학회, 연금정책세미나 자료집.
- 윤석명·양혜진(201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연금학회 연금정책세미나 자료집.
- 정경희·최현수·방효정·이현주·석재은 (2007), 「노후소득보장강화를 위한 경로연금 개편방안」, 정책보고서 2007-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